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38

발의연월일: 2022. 8. 29.

발 의 자: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 · 양정숙 · 안규백

오영환 • 이상헌 • 신정훈

이용선 • 민형배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'8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 · 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         |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|
| 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       | <del>8</del> ) ①   |
|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2년</u> | <u>2027년</u>       |
| <u>1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한 것에 대  | 12월 31일            |
| 해서만 적용한다.                   | ··                 |
| 1. ~ 6. (생 략)             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